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안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 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또는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에 대한 서울특별시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의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①명예시민증은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

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10인 이상의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시장이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서울특별시행정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3. 기타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3항 단서 중 "잔여임기가 6월 미만인 경우"를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로 한다.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교원전체회의"를 "교직원 전체회의"로 하고, 동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3항 단서 중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을 "잔여 임기가 3월 미만

인 경우"로 하고, 동조 제4항중 "학부모 및 교원 전체회의에서 추천된 자로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를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로 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중 "연10회"를 "연8회"로 하고, "연30일"을 "연20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사용료징수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로 한다.

안 제2조의 제목 "(용어의 정의)"를 "(정의)"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사용료의 징수)①학생교육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교육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원 또는 분원별로 따로 징수할 수 있다.

안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6조 및 제8조로 하고, 제6조(종전의 제4조)의 제목 "(사용허가의 제한등)"을 "(사용제한)"으로 하며, 제6조 본문 중 "원장은 다음 각호의"를 '다음 각호의'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교육감은 교육규칙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학생교육원의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하거나 사용 중에 퇴소한 경우 또는 파오납한 경우에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